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1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한민수·조 국·박범계

허 영ㆍ이재관ㆍ박희승

이해식 • 노종면 • 민형배

주철현 • 박지원 • 박해철

송옥주・박상혁・황 희

임오경 • 이병진 • 이연희

한준호 · 정일영 · 오세희

안도걸 · 최민희 · 김 현

김문수 • 황정아 • 문금주

이정헌 · 김교흥 · 김태년

의원(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본래 목적과 달리 도시의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원주민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있음.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 착률은 27.7%에 그침. 2008년 길음뉴타운의 경우 재정착률이 17%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음.

이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함으로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함. 또한, 시행사업자에게 적극적 유인을 주고자,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착률을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게 하려함(안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대책

제9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민 재정착 대책

제6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대책		
<u>13.</u> (생 략)	<u>14.</u> (현행 제13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2. 주민 재정착 대책</u>		
<u>12.</u> (생 략)	<u>13.</u>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			
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			
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1. · 2. (생략)

<신 설>

② ~ ⑤ (생 략)

- 1. 2. (현행과 같음)
- 3.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 ② ~ ⑤ (현행과 같음)